

**【사건번호 : 2024-007】 한국부동산원/국토교통부 건축소유자정보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사건**

**1. 개요**

- 피신청인 : 한국부동산원/국토교통부
- 대상 공공데이터 : 소유자구분정보 파일(건축소유자 정보)
- 신청 목적 : 서비스 제공

**2. 신청취지**

-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\*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.  
\* 기존에 제공하던 건축소유자정보 파일데이터(건축소유자를 식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정보 항목 제외)

**3. 조정내용**

**가. 조정결정 사항**

-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.  
- 또한, 피신청인은 향후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·기업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대장 변동일자 조회 API 등을 적극 개발·제공할 것을 권고한다.

**나. 조정결정 이유**

-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, 공공기관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(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).
- 이 사건 관련 법령, 당사자 제출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, 이 사건 데이터인 건축소유자정보는 국민 누구나 열람·발급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공시 사항이며, 피신청인은 제공중단 이전에도 소유자명,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해 이미 비식별화하여 제공하고 있던 바, 「정보공개법」 제9조제1항제6호(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)에 따른 '비공개대상 정보'라 판단하기 어렵다.
- 따라서, 본 위원회는 기존에 개방했던 것처럼 건축소유자정보 중 건축물 소유자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는 소유자명, 주소 등 개인정보 관련 항목들을 비식별화하고, 건축물대장 변동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.

- 또한, 피신청인이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을 위해 현재 차세대 개방시스템(건축 허브)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·기업 편의를 위해 건축물대장 변동일자를 조회할 수 있는 API 등의 적극 개발·제공을 권고한다.

#### 4. 조정결과

- 위와 같은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 성립